

# 이혼예방을 위한 최근 미국 가족정책에 관한 소고 - 결혼허가증제도 및 서약결혼제도를 중심으로 -

Some Thoughts on Recent Family Policies Designed to Prevent Divor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Special Regard to the Marriage License and the Covenant Marriage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김 혜 선  
조 교 박 희 성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essor* : Kim, Hye Seon

*Assistant* : Park, Hee Sung

## 〈 목 차 〉

I. 서론

II. 미국에서의 이혼예방을 위한 가족정책

III.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rriage Preparation and Preservation Act adopted in Florida which require premarital counseling and covenant marriage laws of Louisiana and Arizona among many kinds of family policy which recently are designed to prevent divor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ost of states in the U.S. require the marriage license prior to having a marriage ceremony. Covenant marriage legislation has admirable motives to strengthen marriage and cure the defects of the no-fault system. In that legislation, the imposition of waiting period for the no-fault ground of divorce, proof of fault requirements, consent requirements, and mandatory course or counseling attendance will likely serve as deterrents to those seeking divorce as a first resort. To sum up, by offering preventive measures in the form of premarital counseling and waiting period before marriage, covenant marriage will force couples entering marriage to carefully consider their actions before they act and prevent broken marriages in the first place. In response to rising divorce rates, the Korea's family policy has put its emphasis on fixing social problems accompanied with family dissolution. Rather, this study suggests that attention in

Korea also should be shifted from fixing broken marriages to preventing them.

◆ key word: 이혼예방, 결혼허가증제도, 서약결혼제도

## I. 서론

이혼의 증가<sup>1)</sup>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현상은 한국의 가족구조 변화를 지적할 때 가장 빈번하게 거론하는 주제중의 하나로, 이혼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이혼가정의 자녀가 겪게 되는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과 같은 이혼 후에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볼 때,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결과 치료에는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이 들며, 설령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대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사회의 위기와 불안으로 작용하므로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예방과 보장이 함께 수행되어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성이 크다. 특히 이혼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절대적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혼에 관한 관심이 점차 이혼증가의 원인 분석 및 이혼 후 직면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던 것으로부터 결혼갈등을 줄이고 자녀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배려된 가족정책으로 바뀌고 있다<sup>2)</sup>. 즉 이제는 이혼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기보다는 그 예방책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Stanley & Markman, 1997)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점점 많은 주들이 결혼준비와 같

등해결을 돕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 (Texaswhitepaper, 1999)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국의 가족정책은 결혼 전 단계에서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에게 결혼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도록 체계화한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결혼 전 상담을 주축으로 이혼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가족정책들이다.

본고는 미국에서 혼전상담을 강조하여 최근에 개정된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se)'제도와 함께 일부의 주에서 이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서약결혼(誓約結婚, covenant marriage)'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이혼이 많이 발생한 미국의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역시 급속한 이혼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보며, 이를 통하여 한국에서도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 II. 미국에서의 이혼예방을 위한 가족정책

### 1. 결혼허가증제도

#### (1) 역사적 배경

미국의 결혼절차법<sup>3)</sup>은 영국의 보통법결혼(common

1) 98년 현재 한국에서 결혼한 10쌍 가운데 3쌍이 이혼을 한다. 97년에는 1000명당 이혼 2건으로 일본의 1.8건이나 프랑스의 1.9건보다 높으며 98년에 들어서는 2.6건으로 더욱 높아졌다. 굳이 서구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이것이 정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라는 데 있다(곽배희, 동아일보 1999년 8월 4일자, 7면)

2) 위스콘신주에서의 '결혼정책조정관(community marriage policy coordinator)' 채용 움직임, 알칸소주의 세금혜택움직임, 유타주 및 플로리다주의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결혼기술과목 포함 등이 그 예이다(The New York Times, Apr. 21, 2000).

3) 미국은 결혼에 관련한 통일된 단일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1973년 주법(州法)의 모델로서 '통일결혼·이혼법(Uniform Marriage and Divorce Act: UMDA)'이 제정되었으나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여 아직까지 결혼관련법은 일반적으로 주단위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law marriage)을 인정하는 소수의 주<sup>4)</sup>를 제외하고는 영국과 대동소이하다. 영국의 결혼절차는 크게 비교적 간단한 민사혼(民事婚)과 엄숙한 결혼의식을 치르는 교회혼(敎會婚)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결혼절차의 특징은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예식 이전에 일정한 예비절차(preliminary procedure)<sup>5)</sup>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일정한 기간과 형식을 거쳐 그 결혼에 장애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후 결혼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비로소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결혼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기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기간에 종교단체에서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일종의 결혼준비교육을 포함하는 상담(premarital counseling)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의 모든 주와 '통일결혼·이혼법(UMDA)'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결혼허가증의 신청과 발급사이에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두고 있다.<sup>6)</sup> 즉, 결혼증서(marriage certificate)<sup>7)</sup>이외에 결혼 전에 공공기관에서 결혼의 자격여부를 따져 발급하도록 한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se)을 받아야 부부

4) 미국에서는 사실혼으로서 보통법결혼(common law marriage 또는 de facto marriage)이 있는데, 이는 식민지 및 서부개척시대에 교통문제 혹은 교회나 관청에서 결혼허가증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혼절차를 따르지 않는 결혼을 말한다. 1930년대 초반 하더라도 미국의 전체 주중 과반수 이상이 보통법결혼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99년 현재 11개의 주와 워싱턴 D.C.만이 보통법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Kay, 2000).

5) 영국의 교회혼은 결혼식에 앞서 다음의 4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결혼예고의 공표(publication of bans of marriage) : 교회에서 그 결혼에 장애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을 촉구할 목적으로 목사가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② 일반허가증의 발급(grant of a common license) : 주교(bishop)가 사제를 통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있으면 당사자 중의 일방이 허가증을 발급받기 전 15일간 거주한 교구의 교회 또는 결혼 당사자 중의 일방이 주로 예배보는 교회에서 결혼예고의 공표절차를 밟지 않고도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결혼장애가 없음을 선언(宣誓)해야 한다. ③ 특별허가증의 발급(grant of a special license) : 이것은 특별신청에 의해 캐터베리 대주교가 발급하는 것으로 이것만 있으면 바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④ 감독동록관의 결혼증서 발급 : 비국교도를 위한 방법이다.

한편, 민사혼에서의 결혼증서발급과 결혼식에 관련한 절차는 결혼허가증을 미리 발급받은 당사자와 그렇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전자의 경우 호적청장에 대한 당사자 일방의 결혼고지(結婚告知)만으로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고지후 게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고지로부터 1일후면 바로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허가증이 없기 때문에 결혼의 양당사자가 호적청장에게로 결혼을 고지하고 결혼장애사유가 없음을 서면으로 엄숙하게 서명하여야 한다. 결혼의사의 고지는 결혼신청부에 기입되어 공중(公衆)에게 게시된다. 그 후 21일이 경과하면 결혼허가증이 발급된다. 결혼식은 그 증서의 발급 후 3개월 내에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 이상의 두가지 증서발급과 결혼식관련절차 중에서 전자의 경우가 보다 신속하기 때문에 비록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나 현재 영국민의 1/4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6) 결혼이라 함은 공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원의 인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증서는 결혼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기록(record)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식이 사법관리(judicial official)에 의해 거행되는 최소 16개 이상의 주에서는 결혼은 사법적 절차(judicial proceeding)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Koppelman, 1997).

7) 미국의 저명한 법률용어사전인 Black's Law Dictionary는 결혼증서와 결혼허가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결혼증서라 함은 결혼식에서 종교적 주례(말하자면, 목사 또는 신부) 혹은 민간인 주례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로서 결혼의 증거로서 담당 공공기관(보통 법원서기)에 제출하여 보관된다(A document that is executed by the religious or civil presiding at a marriage ceremony and filed with a public authority(usu, the court clerk) as evidence of the marriage.). 그리고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se)은 결혼하고자 하는 남녀에게 결혼을 허가하는 문서로서 담당공공기관이 발행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예비부부는 이 허가를 받기 전에 혈액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A document, issued by a public

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유아는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간이 허가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은 없다고 할 수 있다.

#### (2) 개정된 결혼허가증제도의 이혼예방적 기능

최근 미국 몇 개의 주에서는 이혼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을 앞둔 더 많은 커플들이 결혼 전 교육과 혼전 상담 혹은 치료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구체적인 방

법은 결혼 전 교육이나 상담을 이수한 커플에게는 세금혜택을 주거나, 결혼허가증을 받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결혼관련 요금을 감면해주는 특혜를 활용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주는 플로리다주이다.

플로리다주는 1998년 '결혼준비·유지법'(Marriage Preparation and Preservation Act)<sup>8)</sup>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골자는 첫째, 결혼 전에 고등학교에서부터 결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authority, that grants a couple permission to marry. Most states require the couple to take blood tests before obtaining the license.).

- 8) 플로리다주의 개정법은 크게 결혼전준비(marriage preparation)에 관한 조항과 결혼유지(marriage preservation)에 관한 조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결혼전준비 >

1.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필수과목 지정.

고등학생에게 결혼 및 대인관계에서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강좌를 의무적으로 들도록 하였다.

2.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준비교육.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법원이 인정한 '결혼전준비강좌(pre-marital preparation course)'를 적어도 4시간이상 수강하도록 권장하였다.

① 교육내용 : 플로리다 법에서의 권리 및 의무와 요구조건에 대한 개관, 갈등해결, 의사소통기술, 재정책임, 양육 및 부모역할, 일반적으로 결혼한 부부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지식 등을 교육한다.

② 교육담당자의 조건 : 자격이 있는 심리학자·임상사회사업가·결혼과 가족 상담가·정신건강상담가 혹은 종교 기관의 공식적인 대표자 중 1인 이상이 진행해야 한다.

3. 결혼허가증을 신청한 예비부부들은 결혼허가증을 받기 전에 각각 플로리다 법률위원회에서 요약한 '결혼과 이혼과정에서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플로리다 법'에 관한 조항들을 묶은 소책자를 읽었다는 진술서에 반드시 사인을 해야 한다.

4. 결혼준비코스를 이수하고 소책자를 읽었다고 진술서에 사인한 예비부부들에게는 결혼허가증 취득에 드는 비용(보통 약 88~200달러)을 32.5달러정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만약 이 요구조건을 완전히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허가증 유효일은 3일간 연기된다.

5. 결혼허가증을 신청한 모든 예비부부들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부설 결혼과 가족센터(Florida State University Center for Marriage and Family)에서 개발한 익명으로 기입하는 질문지를 받게 되며, 그 질문지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FSU는 예비(pilot)혼전준비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구하는 비용으로 75,000달러를 받는다.

#### < 결혼유지 >

1. 모든 이혼신청요금에 별도로 32.5달러를 추가한다.

2. 이혼을 신청하기 전 60일 이내에 부모의 책임분담, 양육권 혹은 면접권과 같은 최종 판결에 대한 조정을 원할 때에는 미성년이 있는 모든 자녀는 법원이 인정한 '부모교육과 가족 안정화 강좌(Parent Education and Family Stabilization Course)'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이 코스는 최소 4시간 이상 진행된다.

① 교육내용 : 가족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 성인남녀와 자녀 및 사회에 미치는 이혼의 법적·정서적 영향, 가족관계를 재형성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이혼에 따른 각 배우자와 자녀의 경제적인 영향 등을 교육한다.

데, 이 교육을 이수한 예비부부들에게는 결혼허가증에 드는 비용을 감면하는 혜택을 주며 둘째, 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는 이와는 반대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이혼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들은 많은 커플들로 하여금 결혼 및 이혼과 관련하여 내린 의사결정을 다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Lindsey, 1998). 예컨대, 결혼전 상담과 대기기간 때문에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을 감행하기 이전에 자신의 의사결정을 주의깊게 재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차 일어날 수 있는 결혼갈등이나 이혼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를 담당할 플로리다주립대의 '결혼과 가족센터'의 역할이다. 주정부는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당국에 재정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면서도 지원하는 주정부와 법원, 그리고 대학간의 연계 체계는 이혼예방을 위한 좋은 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2. 서약결혼제도

### (1) 서약결혼제도의 도입 배경

미국에서는 무책주의 이혼(no-fault divorce)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인간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무책주의에서는 부모 중의 어느 한쪽 당

사자가 오로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각자는 스스로를 돌 볼 필요는 있을지라도 타인의 행동이나 의견에 대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고 인식되었다(Glendon, 1987). 근자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풍토가 이혼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였다는 반성이 일게 되었다(Wardle, 1999). 그리하여 무책이혼으로 말미암은 이혼증가 및 이에 따른 문제점, 즉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이혼, 땅에 떨어진 가족에 대한 가치, 10대의 임신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약결혼제도가 제시(Simms, 1998)되었다.

서약결혼에 관한 미국 최초의 입법인 서약결혼법(Covenant Marriage Act)이 1997년 루우이지애나주의 하원에서 총투표수 98표 중 전원찬성으로 그리고 상원에서 총투표수 38표 중에서 37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법은 보수적인 기독교인과 가정을 수호하고자 사람들이 무책주의 이혼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인 결과 처음으로 달성한 성공적인 경우이다(Sack, 1997). 그 후 1997년에서 1998년 동안 미국의 17개 주에서 이러한 법제도를 채택하고자 심의하였으나, 이 중에서 오직 아리조나주에서만 1998년에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Kohm, 1999-2000).

### (2) 서약결혼제도의 주요내용

루우이지애나주와 아리조나주에서는 이혼시 무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 서약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주에 시행하고 있는 서약결혼법의 주요내용은 유책사유에 의해서만 이혼을 인정하고, 이혼 전에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갖게 했고 혼전상담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루우이지애나주의 서약결혼법<sup>9)</sup>은 서약결혼에 대해

② 교육담당자의 조건 : 자격이 있는 심리학자 · 임상사회사업가 · 결혼과 가족 상담가 · 정신건강상담가 혹은 종교 기관의 공식적인 대표자 중 2인 이상이 진행해야 한다.

3. 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익명으로 플로리다 FSU 질문지를 반드시 응답해야 하며 질문지는 부모교육강좌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쓰인다.

9) 루우이지애나주의 "서약결혼"이라는 표제 하에 시작되는 § 9:272(A)의 전문(全文): A covenant marriage is a marriage entered into by one male and one female who understand and agree that the marriage between them is a lifelong relationship. Parties to a covenant marriage have received counseling emphasizing the nature and purposes of marriage

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서약결혼이란 결혼관계가 평생동안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합의하는 1인의 남자와 1인의 여자가 맺은 결혼 관계임을 전제로 한다. 둘째, 서약결혼의 당사자는 결혼 전에 서약결혼의 본질과 목적 및 서약결혼에 부가되어 있는 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셋째, 서약결혼의 조건을 완전히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무책당사자는 결혼이 더 이상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유책사유 이혼과 유사한 것으로서 배우자의 간통, 배우자의 중죄 및 투옥 또는 사형, 1년 이상 가족을 유기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아동학대, 2년동안 별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넷째, 이 결혼을 선택하는 예비부부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서약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결혼 전에 공증문서에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유가 없이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2년 이상 기다려야 하며 이 기간동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정기간을 갖고서 그 결혼을 되살리기 위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아리조나주의 서약결혼법도 루우이지에나주가 인정하는 서약결혼상의 이혼사유는 물론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음주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 (3) 서약결혼제도에 관한 평가

서약결혼은 이혼예방을 목적으로 새로이 제정된 만큼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 일례로 미국연방정부는 서약결혼을 통하여 가족기능을 강화시키려는 취지에서 다른 주에서도 시행하기를 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약결혼이 인정됨으로써 사람들은 결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결혼에 좀더 헌신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되어(Wagner, 1997)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러나 과거로 회귀하는 이 결혼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우선, 1997년에 시행된 「Time」지

의 여론조사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1998년 루우이지에나주에서 결혼한 부부 중 1% 미만의 극소수만이 서약결혼을 선택하였다. 아리조나주의 경우에도 서약결혼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Ellman, 2000).

결혼 및 이혼의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동거를 더 촉진하거나 이혼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병리적인 결혼을 방지하고 가족원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누를 범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결혼제도로 말미암아 이혼이 예방된다고 보기보다는 결혼생활에 헌신하고 이혼에 신중한 사람만이 이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교육수준이 높고, 중류층 이상의 소속한 종교집단이 서약결혼에 우호적이라는 보고(Whelan, 1998)가 있다. 즉, 제도로 말미암아 현재와 같은 이혼문화가 바뀔 것이라기 보다는 그 제도가 없어도 역시 이혼하지 않을 집단이 이 제도를 선택할 것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약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서약결혼에 대한 논쟁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 그 증거로 이혼율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서약결혼과 그 밖의 결혼 유지책들을 고려하고 있다(Flory, 2000)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는 복지모델이 다른 유럽국가도 관심을 보였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요구조건'을 점점 엄중하게 하는 것이 이혼증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Lurvey, 1997)이라는 전제하에 서약결혼은 혼전 상담과 같은 예방책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있는 결혼이 시작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한편, 이혼에 대한 인식과 이혼여성의 재혼이나 취업 등 이혼을 둘러싼 환경은 미국과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서약결혼의 배경을 우리사회에

*and the responsibilities thereto. Only when there has been a complete and total breach of the marital covenant commitment may the non-breaching party seek a declaration that the marriage is no longer legally recognized.*

액면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 이혼원인과 파탄주의 이혼원인을 병용하고 있다. 이혼원인은 연혁적으로 볼 때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 민법은 과도기적인 이혼원인을 채용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서약결혼은 무책주의 이혼의 비판으로부터 제기된 제도이므로 한국의 상황에서는 별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강한 사회, 남성이 주로 유책자인 사회, 이혼녀의 취업에 제약이 많은 사회, 이혼자녀를 비롯한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인 파탄주의는 시기상조이며, 파탄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도 아직은 많은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화숙, 1995)도 제기되는 만큼 미국의 서약결혼제도의 내용 중에서 유책주의에 관한 사항은 미국의 서약결혼 시행결과에 따라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Ⅲ. 결론

최근의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결혼허가 증제도와 서약결혼에서 특징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결혼전의 대기기간, 결혼준비교육 및 상담과 같은 예방적 수단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를 법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결혼전 기간은 이혼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시기로 알려져 있다. 결혼준비교육의 경우 플로리다주의 개정법에서 결혼하기 전에 고등학교에서부터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의무적으로 교육받으며 특히 결혼을 앞둔 단계에서는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갈등을 줄이고 나아가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혼시에도 이혼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특히 미성년의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을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이혼에 관한 사안에 있어 철저하게 예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 가족정책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위치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약결혼의 전제조건으로서 예비부부들은 강제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결혼 전 상담을 받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카톨릭교회와 다른 종교단체에서 강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사회에서 강제적 상담제도를 두고자 하는 노력은 새로운 시도(Nolan, 1999)로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몇몇 시(市)에서는 지방 판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 전 상담을 선택할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으며, 많은 종교단체는 주례목사가 결혼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결혼전 예비부부에게 상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Wolfe, 1998) 결혼 전 상담은 예비부부들이 결혼생활에서 직면할 문제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증가하는 이혼율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가족정책을 통해 이혼예방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결혼전 상담 및 교육, 결혼전의 대기기간이라는 형태로 예방적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우선 파괴된 결혼을 수리하는 것에서 파경을 예방하는 쪽으로 관심을 옮기고 있다.

이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한국의 가족정책은 가족해체에 따른 이른바 사회문제에 대한 사후보장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가정복지사업은 제한된 조직, 인력 및 예산을 기초로,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 가정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는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일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복지사업이 일부 취약대상만을 위주로 보호서비스에 국한하고 있음은 상대적으로 한국사회가 가족부양에 높은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공세권·김승권·조애저, 1993). 그러나 문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의 분화 및 해체, 또는 기능부전 때문에 사회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보다 높은 이혼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경험한 미국에서는 가족을 지원하고 강화시키는 정책개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책들은 장차 배우자들이 가족을 이해하고 결혼의 책임과 보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가족을 강화시키거나 이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들에 관하여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개인 중심이 아닌 가정중심의 통합적인 가정복지체계를 형성하여 이혼예방을 위한 예방적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의 가족정책에서 볼 수 있는 또 한가지 특징은 정부와 법조계(법원), 그리고 대학과의 협동체제이다. 플로리다주의 경우에서 보듯이 주정부는 재정을 통하여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은 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을 지도할 전문가를 양성하며, 법원은 강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혼예방을 위한 가정복지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였다. Amato와 Booth(1997)는 이혼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 학교, 노동자, 법원, 그리고 교회들이 불행한 모든 부부들이 여유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혼예방을 위한 가정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행정적인 기반조성이 마련되어야 하나 한편으로는 대학에서도 지역사회에 책임의식을 갖고 기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본 논문에서 개정된 결혼허가증제도와 서약 결혼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못하여 그 시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한국의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문제점 및 적용상 고려할 만한 점들을 논의하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 【참고 문헌】

- 공세권·김승권·조애저(1993). 가족의 변화와 가족 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동아일보(1999). 광배회-이혼율 급증 어떻게 볼 것인가. 동아일보 1999년 8월 4일자 7면.
- 이화숙(1995). 이혼원인에 있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경원대법학논총 2호. 55-80.
- Amato, P. R. & Booth, A.(1997). *A Generation at Risk*.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elluck, P. (2000). Some States Act to Save Marriage Before the "I Dos". THE NEW YORK TIMES, 4/21, 2000.
- Black's Law Dictionary(1999). 7th edition. West Group : St.Paul, Minn.
- Ellman, I.(2000), Divorce rates, marriage rates, and the problematic persistence of traditional marital roles, *Family Law Quarterly* 34, 1-42.
- Flory, H.(2000). "I promise to love, honor, obey ... and not divorce you": Covenant marriage and the backlash against no-fault divorce. *Family Law Quarterly* 34, 133-147.
- Glendon, M.(1987). *Abortion and divorce in western law: American failures, european challenges*.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mm, M.(1999-2000). Opportuning virtue: The binding ties of covenant marriage examined. *Regent University Law Review* 12, 73-90.
- Kay H.(2000). From the second sex to the joint venture: An overview of women's rights and family law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California Law Review* 88, 2017-2093
- Kirm, W(1997). The Ties That Bind. TIME, 8/18, 1997.
- Kohm L.(1999-2000). A comparative survey of covenant marriage proposals in the United States. *Regent University Law Review* 12, 31-51.
- Koppelman, A.(1997). Dumb and DOMA: Why the defense of Marriage Act is unconstitutional. *Iowa Law Review* 83, 1-33.
- Lindsey, N(1998). Marriage and divorce: Degrees of "I do," An analysis of the ever-changing paradigm of divorce. *University of Florida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9, 265-286.
- Nolan, B.(1999). Catholic Bishops to Bless Either Form of Civil Marriage in Louisiana. THE



- ADVOCATE (Baton Rouge, LA.) 10/31, 1999.  
12B
- Sack, K.(1997). Louisiana Approves Measures to Tighten Marriage Bonds. NEW YORK TIMES, 6/24, 1997.
- Simms, A.(1998). Talks on Avoiding Divorce Cycle. TULSA WORLD, 7/19, 1998. 16.
- Stanley, S. M. & Markman, H. J.(1997). *Acting on what we know : The hope of prevention*. Denver, Colorado : PREP, Inc.
- Wardle, L.(1999), Divorce reform at the turn of the millenium: Certainties and possibilities. *Family Law Quarterly* 33, 783-800.
- Wagner, D. M.(1997). Divorce reform : An idea whose time is coming. *Family Policy* 10(5).(www. frc.org/fampol/fp97ims.html).
- Whelan, C. B.(1998). No Honeymoon for Covenant Marriage. WALL STREET JOURNAL 8/17, 1998. A14.
- Wolf, R.(1998). States Slow to Plunge into Covenant Marriage. USA TODAY, 6/16, 1998.3A.
- 미국연방하원 <http://www.house.gov/library/values/recover6.asp>
- 매리코파군(郡) <http://www.maricopa.gov/clkcourt/marlic.html>
- 결혼, 가족, 커플교육 연합 <http://www.smartmarriages.com/texaswhitepaper.html>